

##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개소 ('21.5.18.)

부정 성적서의 발행·사용·유통을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기관과 적합성평가사업자에 대한 부정행위 조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조사 전문기관입니다.

## 신고방법 및 신고에 따른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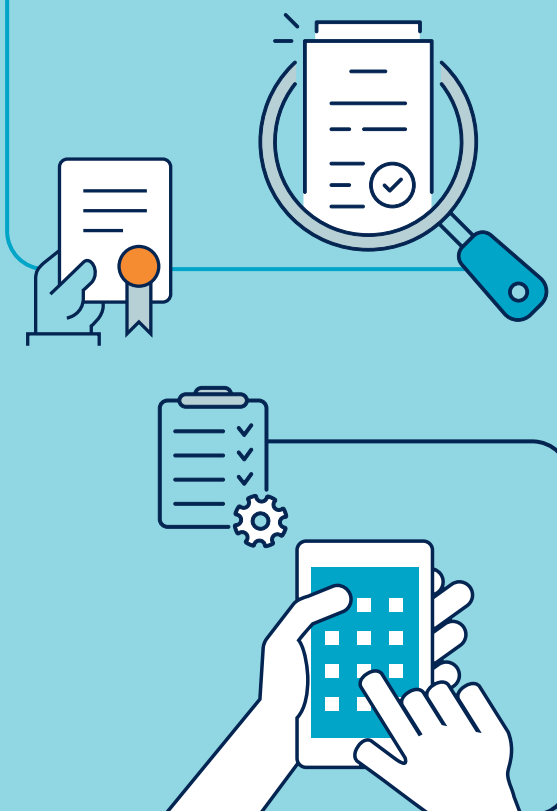
### 신고방법

인터넷	www.tacci.kr
대표번호	1833-5577
이메일	tacci@kips.kr

### 신고 처리절차



#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





#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란?

부정 성적서, 위조·변조된 성적서, 오류가 있는 성적서가 발급·사용·유통된 것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근절하고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용어정리



성적서 시험, 검사, 교정 성적서 및 인증서

적합성평가기관 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기관·검사기관·교정기관 및 인증기관

## 조사대상



### 공인기관

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적합성평가기관

### 적합성평가사업자

제품 등의 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아닌 자로서 대가를 받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적합성평가기관

### 기타

적합성평가 의뢰자 또는 성적서를 업무에 활용하는 자

## 부정 및 위조·변조 성적서

### 법 제5조제3항

(대상: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

- 평가결과를 고의로 조작하여 성적서를 발급
-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성적서를 발급
-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

### 법 제5조제5항

(대상: 적합성평가 의뢰자 또는 성적서를 업무에 활용하는 자)

- 성적서를 위조·변조한 행위
- 부정 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활용한 행위

## 오류 성적서

### 법 제5조제4항

(대상: 공인기관)

- 시험 항목의 누락
- 시험 항목의 오적용
- 측정 기준의 오적용

## 처벌규정

### 법 제5조제3항과 제5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 제5조제4항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성적서 부정행위 사례

## 사례 1



적합성평가사업자 △△사는 전기용품 안전기준의 일부 시험항목에 대해 미평가 후 결과를 적합으로 기재하여 성적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는, 성적서의 일부 시험을 미평가하였으나, 결과를 적합으로 표기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2호 위반

↓  
형사고발 조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례 2



건축자재 유통 업체 □□사는 유통제품의 성능 관련 시험을 의뢰하여 성적서를 발급받았으나, 결과값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발급된 시험성적서의 결과값을 임의로 수정해 이를 납품업체 등 관계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는, 적합성평가기관이 발급한 성적서를 사용자(의뢰자)가 위조·변조한 것으로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위반

↓  
형사고발 조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